

## 【사건번호 2019-031】 병무청 편평족(평발) X-ray 데이터 사건

### 1. 개요

- 피신청인 : 병무청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편평족(평발) X-ray 데이터
- 데이터 신청 목적
  - 병역판정방법 연구

### 2. 신청취지

- 신청인은 병역판정 관련 연구 목적으로 편평족(평발) 검사 X-ray\* 데이터를 제공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분쟁조정 신청

### 3. 사실조사

#### 가. 데이터 수집·관리 및 제공 현황

- 피신청인은 병역법 제11조 내지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8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데이터와 관련하여 심리·신체검사(신장, 체중, 혈압, 시력 등)에 관한 정형 데이터와 X-ray·CT·MRI 촬영 사진 등 250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수집할 때 병역판정검사의 수검자에게 ‘병역판정검사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병무행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아니함’을 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병역판정검사 관련 X-ray 사진과 같은 신체정보를 공개한 전례가 없음

#### 나. 이 사건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이며(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 이 사건 데이터는 병무청이 병역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 정의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다.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수검자의 발모양을 X-ray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 기타 법령상 보호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도 이에 근거한 제공거부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제17조제1항제1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음
-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대법원 2012.6.18.선고 2011두2361),

-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번호 제공에 관한 사건(2018-014)에서 자동차등록번호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동차등록번호와 소유주 이름을 알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법령 및 관행을 고려하면, 자동차 등록번호 데이터가 제공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조정한 바 있음
-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피신청인은 X-ray 사진이 대국민 공개될 경우 사진 상의 보형물 삽입, 발형태의 독특성 등으로 특정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각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과 같이 한정된 범위의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적인 평발모양으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침해 우려를 주장하는지에 대해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소명을 듣고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 o 2018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용자가 제공을 신청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공대상인지 여부가 논의되었는데, 1) 개인정보 포함을 이유로 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 대비 제공데이터의 범위가 축소되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2) 제공받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위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음
-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연구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므로, 이 사건 데이터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우려가 적다는 차이점이 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제4호)
- 당사자의 의견을 사전청취한 결과, 발모양이 독특한 경우 등 특수사례에

대한 X-ray 사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일반적인 평발에 대한 X-ray 사진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식별 가능성을 부정하나 피신청인은 치아 감별로 개인 신원을 파악한 사례와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추세를 볼 때 향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당사자의 주장 및 근거를 보다 상세히 청취한 후 제공 가능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이 사건 신청인의 데이터 이용목적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경우 해당 목적 내에서만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이용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는 소방청 화재발생지 상세정보 사건(2018-012)에서 신청인은 데이터의 특정 목적 내 이용, 제3자 유출금지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조정할 바 있음

<b>참고</b>	<b>소방청 화재발생지 상세주소 데이터 사건(2018-012)</b>
<p>□ 신청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은 언론사 기자로, 언론보도를 위한 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화재발생지 데이터*를 신청함</li> <li style="padding-left: 40px;">* 화재발생지 상세주소(세부지번, 아파트 동·호수 포함) 및 화재개요(이하 ‘이 사건 데이터’라 함)</li> <li>▪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함</li> </ul> <p>□ 조정결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발생지 상세주소 데이터와 관련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피신청인이 제공 중인 주소데이터에 공동주택의 ‘건물명(예: OO아파트) 및 동 데이터(예: 101동)’를 추가하여 제공한다.</li> <li>· 공동주택의 호수 및 단독주택의 지번 주소의 경우 일련번호로 치환하여 제공하며, 치환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li> </ul> </li> </ul> </li> </ul>	

- 화재개요 데이터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지정하는 1,000~2,000건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여 제공하고, 삭제 등 가공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신청인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용조건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언론보도를 위한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하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별 화재지를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신청인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신청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제공 및 이용조건에 동의한다는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 4. 조정내용

##### 가. 조정결정 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상세 조건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다.
-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조건은 병역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며, 이 사건 데이터를 한정된 공간에서 신청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재식별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는 등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에 응해 신청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법 제17조제1항)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연구계획 및 활용방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데이터를 피신청기관 외로 반출하여 이용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법적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신청인의 연구는 병무청의 병역행정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병역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연구를 위한 데이터 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이 사건 데이터를 한정된 공간에서 해당 연구목적으로만 이용하며 재식별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는 것을 기본조건으로 하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한 결과에 따르도록 함

## 5. 조정결과

- 조정성립